

준 비 서 면

사 건 2000가단0000 계약금 등 반환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중도금수령거절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계약해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는 20〇〇. 〇. 〇. 피고 소유의 〇〇시 〇〇동 〇〇 대 166㎡ 및 지상 주택을 대금 1억 2,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〇. 〇〇. 약속대로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중도금 5,0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집이 비어있는 관계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처 소외 ◈◈◈가 운영하는 같은 동 소재 ○○갈비집으로 찾아가 중도금의 지급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의 처 소외 ◈◈◈는 피고가 중도금을 수령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2. 계약금의 반환

피고는 20〇〇. 〇〇. 〇. 원고에게 전화로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므로 매매가격을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원고가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〇〇. 〇〇. 〇〇. 계약금 중 금500만원을 반환하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3. 위약금의 지급책임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원인이 원고가 중도금을 약정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부인합니다. 피고는 원

2000. 0. 0.

하는 금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cork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소 후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부수	준비서면 1부 및 상대방	제출의무	지방법원 합의부와 그 이상의 상
			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수만큼의 부본 제출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
의 의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기 재 사 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음>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이 됩전되 표시 자백간주이익(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진술의제의 이익(민사소		
 효 과	송법 제148조 제1항), 실권효의 배제(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	소의 취하 동의권(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기 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손		
	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함(민법 제398조 제1		
	항 내지 제4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		
	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이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		
	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		
	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		
	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		
	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		
	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준비서면

결).